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유 아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유치원규칙 내 모호한 학적사항을 정비하고 주 5일제 수업 안착에 따른 토요일을 휴업일로 명시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현장의 명확한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항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유치원규칙 기재사항 중 학적처리 용어 개정(안 제10조제1항제5호)
- 나.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한 휴업일 설정 및 토요일의 휴업일 포함(안 제14조)
- 다.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 회차 적용 규정 명확화(안 별표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심사예정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편입학, 전학, 휴학”을 “전입학, 전출, 휴학, 복학, 자퇴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”를 “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, 토요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경우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

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,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중 “위반횟수는”을 “기간의 계산은”으로, “한 날과”를 “받은 날과 그 처분 후”로, “적발한”을 “하여 적발된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유치원규칙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5. 입학, 재입학, <u>편입학</u> , <u>전학</u> , <u>휴학</u> , <u>퇴학</u> , <u>수료</u> 및 <u>졸업</u> 6. ~ 9. (생 략) ② (생 략)	제10조(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전입학</u> , <u>전출</u> , <u>휴학</u> , <u>복학</u> , <u>자퇴</u> ----- 6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휴업일 등) 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<u>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되</u> ,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·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4조(휴업일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, 토요일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경우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</u> ④ <u>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은 제12조제</u>
<u><신 설></u>	

	<u>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, 그 수업일수만큼 제 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.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유아교육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556